

(知)(的)(所)(有)(權)(紛)(爭)(事)(例)

## 歌唱의 人格的保護限界

—美著作権法엔 人格權規定없다—

<1977年 6月 8日, 美일리노이주高法判決>

1. 原告: 오하이오 브레이어즈 및 포노그램會社

2. 被告: 웨스트바운드會社

3. 事件概要

原告들의 主張인즉 過去에 원고들이 所屬되어 있던 音樂錄音出版社인被告와 그系列會社는 원고들이被告會社在籍中에 創作, 演奏한 未編輯, 未完成演奏曲을 스타디오에서 테이프로 만들고 미완성의 이曲을 위하여 新曲과 歌詞를 붙여 다른 音樂家로 하여금 소리를 넣어 마무리한 레코드를 Rattlesnake라고 命名, 原告그룹의 오하이오 브레이어즈의 레코드로하여 發賣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行爲는 일리노이주의 詐欺去來團束法등에違反된다고 提訴하기에 이른 것이다. 즉 이미 1次發表한 歌曲을 新曲으로서 廣告하거나 어느 音樂家에게 不完全한 것을 完成 또는 원고의 作品이라 하여 파는 행위는 違法이란 것이다.

이에 대해 1審判事는 피고의 레코드製造頒布의豫備的禁止命令申請을 許可하게 되었다. 그法的根據는 일리노이주消費

者詐欺虛偽去來業務團束法, 統一詐欺去來業務團束法 및 코몬로 不正競爭防止法에 의거한 것이며 그 신청에 따라 명령한 것이다.

한편 피고는 이같은豫備的禁止命令에不服 上訴하였다. 즉當事者間의 契約으로서 錄音, 頒布契約에 의해 원고의 연주와 第3者의 연주를組合하여 만들 權利를 피고가 取得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스타디오에서 행한 연주의 테이프를 만드는 행위는 계약에 의해 취득한前述權利範圍內의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 4. 判決要旨

上訴에 대해 이리노이高法은 원고의 연주와 第3者的 연주를組合하여 만든다는 契約上の 권리는 원고의 가곡에 소리를 넣어 행하는데까지 擴張하여 解釋되어서는 안되며同一레코드盤에 원고의 가곡이외에 다른 音盤家의 가곡도 넣을 수가 있다고 해석된다 하여 피고의 주장을排斥하였다.

### 5. 解說

高法이 계약을 狹義로 해석한 理由는 著作物에 의한 財產

權(literary property)에 관한 계약에서는 明文으로 許諾되어 있거나 계약에 의해 默示의이긴 하나 分明히 허락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면 物質的인 變更을 加할 권리가 許與된다고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점에 있었다.

契約解釋上의 이 基準은 人格權의 認知에 가깝기는 하나法院은 인격권에 의거하여 이決定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美著作権法 第10條에 規定한 錄音物은 著作物로서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러나 美國에는 인격권의 규정이 없다. 다만 國家에 따라서는 實演 레코드가 著作隣接權의 보호를 받을 수가 되어 저작권과는 달리 一般民法의 인격권뿐이며 獨立된 인격권의 규정은 없는 나라도 있다. 日本이 이 경우에 속한다.

